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66
----------	-----

2017.3.3.(금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박한범 의원 등 7명
- 나. 발의일자 : 2017년 2월 13일
- 다. 회부일자 : 2017년 2월 15일
- 라. 상정일자 : 2017년 2월 23일
 - 제3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.의결
- 마. 주요내용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박한범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·장려하고,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자 직무발명의 보호·장려를 위한 처분보상금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처분보상금을 처분수익금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·장려하고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처분보상금을 처분수익금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예산의 증가는 예상되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53건 42,821천 원이 소요된 것으로 미루어 충청북도의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,
-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곳에서 기 시행하고 있어 형평성 면에서도 부합한 점 등 공무원 직무발명과 연구의욕 향상을 위한 이번 개정조례는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의안번호	제 566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2월 일 (제354회)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박한범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7년 2월 13일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박한범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6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7년 2월 13일

발 의 자 : 박한범, 김학철, 연철흠,
박봉순, 이언구, 최병윤,
엄재창

1. 개정이유

- 충청북도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·장려하고,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자 직무발명의 보호·장려를 위한 처분보상금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처분보상금을 처분수익금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」(특허청)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행정국 자치행정과와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관계없음.
- 라. 입법예고 : 2017. 2. 3 ~ 2. 10(7일간)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과 제2항 중 “100분의 30” 을 각각 “100분의 50” 으로 한다.

별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지 서식]

<u>직 무 발 명 신 고 서</u>			
발 명 자	① 성 명	한글 : 한자 :	② 생년월일
	③ 주 소		
	④ 소 속	현재 : (발명당시 :)	
	⑤ 직급·직위	현재 : (발명당시 :)	
⑥ 발명의 종별		특허(품종보호, 실용신안, 의장)	
⑦ 발명의 명칭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신 고 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충청북도지사 귀하</p>			
<p>※ 첨부서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.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 		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처분보상금) 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<u>100분의 30</u>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<u>100분의 30</u>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처분보상금) 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<u>100분의 50</u>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<u>100분의 50</u>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(특허청)

제16조(등록보상금)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.

제17조(처분보상금)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가. 명 칭 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
- 나. 주요사업 : 직무발명자에게 보상금 지급
- 다. 추진근거 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직무발명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

3. 관련조문

- 안 제8조(처분보상금)
 - 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 - ②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

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재정수반요인
 - 직무발명자에 대한 보상금(처분보상금)을 상향지원
- 나. 추계의 전제
 - 2016년까지의 지원 현황을 감안하여 비용추계
- 다. 추 계 결 과 : '17년부터 향후 5년간 총 5천만원 정도 소요
- 라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‘17년)	2차년도 (‘18년)	3차년도 (‘19년)	4차년도 (‘20년)	5차년도 (‘21년)	계
세 입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국 비						
도 비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기타(사업수입)						
세 출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사 업 비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재원 조달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	지방세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특별회계						
△△특별회계						
△△특별회계						
구·군비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

※ 처분보상금 : ‘11년도 4건 12,901천원, ‘12년도 17건 11,718천원, ‘13년도 1건 900천원, ‘15년도 5건 2,463천원, ‘16년도 26건 14,839원

6. 작성자 :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문석구